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



金寬治
〈기획조정실장〉

1. 배상책임보험의 의의

현대사회는 산업과 경제규모가 커지고 시민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기업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통하여 타인의 신체·생명·또는 재산을 해쳐 이에 따르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과실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인 제3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을 보험회사에 전가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보험이다.

그러므로 배상책임보험의 이해당사자는 보험회사(보험자)와 피보험자 외에 피해자가 포함되는 것이 특징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산업과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각종 재해의 위험은 종류와 규모면에서 점차 커지는 추세이며, 대형 재해의 발생은 가해자인 피보험자 자신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선의의 제3자인 다수의 국민이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1971년 대원각호텔의 LP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사고와 1977년의 이리역 화약폭발사고 등은 다수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준 대표적인 예로서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하다.

그러나 이러한 재해의 발생은 가해자의 재력을 거의 파산상태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와같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피해액을 정부예산으로 보상하여 주거나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평소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케 하여 대비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에 보험가입을 당해 위험에 따라 강제화한 법률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원자력손해 배상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가스관계법령(3가지)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 또는 화재보험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개발배경

최근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추세에 따라 각종 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그 종류도 다양하게 되어 기존의 가스관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가스사업법)을 세분화하고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1983년 12월 31일 현재의 가스관계 3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으로 제정 및 개정되었으며, 제개정시 가스사업자 등에게 제3자의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였다.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한국보험공사를 중심으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상품개발에 착수하여 1년여 동안 관계기관간에 상품의 내용, 담보위험 및 범위와 적용요율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1984년 12월 28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영위(營爲)인가를 받아 판매가 개시되었다.

3. 공동인수의 배경과 의의

당 협회는 한국보험공사로 부터 손해보험공동인수협정의 변경인가를 받아 1985년 1월 1일부터 198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전주 등 7대도시에 소재한 물건에 대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업무를 취급하게 되었으며, 동 업무의 취급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풀이하여 볼 수 있다.

첫째, 특수건물과의 관계

기존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중 다수의 물건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담보위험의 일부가 중복되고 2종의 의무보험 취급기관이 다를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분쟁 및 손해보상의 지연등의 우려가 있으며, 보험계약 체결에 따르는 보험계약자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고,

둘째, 위험관리의 측면

당협회는 10년 이상 특수건물과 대형위험 집적 물건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를 관련 보험업무와 병행 수행하여 축적된 위험관리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동보험의 요율등이 경험에 의하여 산출된 것이 아니고 3년 시한부 운용키로 한 시험요율인 점등은 보험회사의 위험분산과 단기간내 경험통계에 의한 경험요율의 산출의 기초를 다질 필요가 있으며,

셋째, 보험계약자의 편의

의무보험은 가능한한 사업비를 최소화하여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부담을 경감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회사가 수익성을 감안하여 보험계약을 기피하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가스업자가 보험기간중 가스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인 제3자에게 부담할 배상책임을 보험회사에 전가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보험

거나 선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되며, 보험계약자가 손쉽게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대의 배려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4.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주요내용과 특징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하 "가스보험"이라 한다.)의 주요내용과 다른 보험과의 차이점 등은 다음과 같다.

● 가입대상

- 가스사업자(제조·판매·충전등)
- 가스용기 제조 및 판매사업자
- 가스사용신고자 중 법령이 정한자

● 보상하는 손해

가스사업자의 가스사업장에서 부터 가스가 최종 소비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과실에 의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다.

화재보험의 신체손해배상책임 담보특약(이하 "신배책"이라 한다.)은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보상되는 무과실책임보험인 점과는 차이가 있다.

● 보상한도액

보상한도액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구분되어 대인배상은 1인당 사망 5백만원, 부상의 경우 급별 보상한도액까지의 실손해액, 대물배상은 1사고당 5천만원 이상 약정된 보상한도액으로서 대인배상은 인원의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가스보험의 대인보상한도액은 무제한이라 할 수 있다.

일반배상책임보험은 1사고당 총보상한도액이 약정되어 대인배상의 인원이 제한되고 있다.

● 면책사항

배상책임보험의 일반적인 면책사항과 같은 절대적 면책사항(고의, 전쟁위험, 천재지변등)과 상대적 면책사항

(친족, 종업원에 대한 배상책임, 임차건물의 소유자에게 대한 배상책임, 기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일반배상책임보험의 가스사고에 대한 종합보험이므로 일반배상책임보험의 각종 특별약관에서 면책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이 가스보험에서는 담보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신배책은 절대적 면책사항 외에 피보험자와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에 대한 배상책임만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과실책임보험으로서의 당연한 규정이라 하겠다.

또한 타인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자가 가스보험에 가입할 경우 건물소유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임차자특별약관을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다른 의무보험과의 관계

가스보험의 가입의무자가 다른 법률에 의한 보험가입의무자(자배책·신배책등)일 경우 사망을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이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만 초과액을 보상한다.

만약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이는 준법정신을 요구하는 경고적 의미와 부당이득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으나, 보상에서 불리한 만큼의 보험료할인 등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보험료의 정산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시 수수한 보험료가 확정보험료가 되나 가스보험은 보험기간중의 매출액 등이 확정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며, 보험계약 체결시 수수한 보험료는 예납보험료이므로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확정보험료와 예납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 손해율에 따르는 보험요율의 조정

가스보험은 과거 3년간의 평균손해율에 따라 다음해의 적용보험요율을 조정할 수 있는바, 평균손해율이 40%미만일 경우 30% 할인되는 반면 평균손해율이 160%이상일 경우 100%까지 할증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5. 맺음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국내에서 처음 판매하는 보험으로서 초기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나타나겠으나 동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당협회는 보험산업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는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동보험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산업 전반에 기여하기 위한 발전적인 연구를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

신상품소개

휴대용 소화기 생산

「안전화확」은 고성능 기체소화제인 하론가스를 충전시켜 화재진화에 사용하는 휴대용 하론1301소화기를 국산화해서 국내공급에 나섰다.

하론1301소화기는 염화소화가스인 하론가스를 분사, 화재발생장소에서 연소의 연쇄반응을 억제함으로써 진화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충전된 하론가스를 사용한 뒤 재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제품이다.

이 소화기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 고압의 하론가스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론1211소화기보다 진화효과가 높다는 것이다.

특히 하론1301소화기는 지금까지 빌딩등에 설치된 고정소화시설에만 사용해왔던 고압의 하론가스를 휴대용 용기에 충전, 사용할 수 있어 소방설비에 대한 투자비를 줄일 수 있는 잇점이 있다.

가스누출 자동차단기 개발

주식회사「일광」은 가스누출 자동차단기 가스탐을 개발, 3월부터 시판할 예정이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밀시험에 합격해 이미 특허를 출원해 놓은 이 제품은 LPG, LNG, 도시가스 및 기타 가연성가스를 사용할 때 가스배관에 부착시켜두면 가스가 누출될 경우 경보음을 내면서 가스를 즉각 차단하도록 되어있다.